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 4. 22.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 4. 10. / 한선미 의원 외 8인

나. 회부일자: 2026. 4. 15.

다. 상정일자: 제283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2026. 4. 22.)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권영숙 의원】

가. 제안이유

- 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 및 정비구역 내 동물보호를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동물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동물복지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 조례의 조문 체계를 5개 장으로 정비하고, 동물복지위원회 관련 규정을 다수 조문으로 분리하며, 용어 및 법령 인용의 오류를 바로잡아 조례의 명확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전체를 총칙, 동물복지위원회, 동물의 관리 및 보호, 반려견 놀이터, 보칙의 5개 장으로 체계화함(안 제1장부터 제5장까지)

-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위원장 직무, 위원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별도 조문으로 분리하여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 동물등록 관련 조문 사이에 있던 맹견에 대한 조문을 동물의 관리 및 보호의 장으로 이동함(안 제21조 및 제22조)
- 정비구역 내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한 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제3항)
-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 · 위탁보호비 등 돌봄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29조)
- 조문의 내용에 맞추어 '소유자'를 '소유자 등'으로 통일하고, 현행 제2조에서 정의하는 약칭에 따라 올바르게 바꾸는 등 용어 및 법령 인용을 정비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4조, 제30조, 제31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동물보호법」 제4조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입법예고 : 2026. 4. 6.~ 4. 10.(제출된 의견 없음)

3. 검토보고(전문위원 권한)

가. 개정 목적 및 필요성

-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4월 10일 한선미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되어, 2026년 4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증가와 함께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돌봄 문제 및 재개발·재건축 지역 내 동물 방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 이에 본 개정안은 동물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본 개정안은 「동물보호법」 제4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범위 내에서 동물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치사무 범위 내 입법으로서 상위법과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주요 내용 검토

(1) 조례 체계 및 조문 정비

- 현행 조례는 다수의 조문이 혼재되어 있어 체계적 구분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 특히 일부 조문에 설치, 구성, 운영 등 복합적인 내용이 집중되어 있어 가독성과 법적 명확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조례를 5개 장으로 재구성하고 조문을 기능별로 분리한 것은 조례 체계 정비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2) 동물복지위원회 기능 정비(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위원장 직무 및 위원 해촉 등을 별도 조문으로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이는 정책 자문기구로서의 전문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3) 정비구역 내 동물 보호 지원 근거 마련(안 제26조제3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¹⁾」에 따른 정비구역은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개발 과정에서 동물의 유기 및 방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임.
- 본 개정안은 이러한 정비구역 내 동물의 구조 및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이는 유기동물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며, 임의규정으로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서울시는 시민 제안을 반영하여 2020년 1월 「서울특별시 동물 보호 조례」를 개정²⁾한 바 있으며, 본 개정안은 이러한 상위 조례의 입법 취지와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자치구 차원에서 제도를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정합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1)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2) 이는 시민 참여 기반 정책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제안된 내용으로, 2018년 12월 19일 한 시민이 재건축 지역 내 길고양이들이 건물 철거 과정에서 폐기물 등에 의해 폐사하는 문제를 제기하며 보호대책 마련을 요청한 데서 비롯된 것임. 해당 제안은 총 5,676건의 시민 공감을 얻는 등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으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동물 보호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확인된 사례임.

제25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등)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내 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영 제6조에 따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① · ② (생 략)</p> <p><신 설></p>	<p>제26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영 제6조³⁾에 따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4) 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 지원 신설(안 제29조)

-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 및 위탁보호비 등 돌봄 지원 근거⁴⁾를 신설함.
- 지원 대상에 ‘진료비’, ‘위탁보호비’ 등을 명시하였으며, 구청장이 지정하거나 협약을 체결한 동물병원 등의 기관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경비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음.
- 또한, 경비를 지원받는 취약계층 대상자는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였음.

3) 제6조(동물보호 민간단체의 범위)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취약계층을 위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제정.

- 마포구는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 매칭사업으로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5)’을 통해 취약계층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6년 기준 총사업비는 39,000천원 규모임.
- 또한 ‘우리동네 펫위탁소 사업6)’을 통해 취약계층 반려동물의 위탁보호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6년 기준 총사업비는 6,000천원 규모임.
- 이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의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반려동물 복지 증진은 물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현행	개정안
<p><u><신 설></u></p>	<p><u>제29조(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 지원) ① 구청장은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적절한 보호와 치료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u></p> <p><u>1. 반려동물 진료비</u></p> <p><u>2. 반려동물 위탁보호비</u></p> <p><u>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u>② 제1항에 따른 경비는 구청장</u></p>

5) 우리동네 동물병원 지정병원 : 7개소(2026)/홍익종합동물병원, 서교동물병원, 깨비동물병원, 닥터호오동물병원, 워너비동물병원, 망원동물종합병원, 우리동생동물병원

6) 우리동네 펫위탁소 : 2개소(2026)/포شم플레이스(반려견 전용), 망원견 애견유치원&애견호텔(반려견, 반려묘)

이 지정하거나 협약을 체결한 동물병원 등의 기관에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기타 용어 정비(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4조, 제30조, 제31조)

- ‘소유자’를 ‘소유자 등’으로 통일하고, 법령 인용 및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체계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종합 검토 결과

- 본 개정안은 조례 체계 및 조문 정비를 통해 법적 명확성과 체계성을 제고하고, 동물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 특히, 마포구에서 이미 시행 중인 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 지원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과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마포구 추진사업 현황

□ 취약계층 대상 반려동물 돌봄 지원 사업(서울시-마포 매칭사업)

사업명	지원 구분	지원 대상	세부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우리동네 동물병원	의료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등록동물 [개, 고양이]의 소유자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항목 - 필수진료 :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 선택진료 :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 및 중성화수술 등 *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진료비 20만원 - 보호자 부담 1만원 * 선택진료비 최대 20만원 - 초과비용 보호자 부담
우리동네 펫위탁소	위탁 돌봄	<경제적 저소득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사회적 취약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피해자(보호시설 입소자) 및 기타 * 1인가구 (※ 공통기준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등록동물[개, 고양이]의 소유자여야 함. - 단, 범죄피해자의 경우 실거주지 기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기간(마리 당) - 1인가구 외 : 연 최대 10일 - 1인가구 : 반기별 최대 5일 (※ 횟수 제한 없음)	이용자 부담 없음 (※ 단, 위탁기간을 초과하여 위탁할 경우 해당 비용은 보호자 부담)

* 우리동네 동물병원 지정병원 : 7개소(2026)

- 홍익종합동물병원, 서교동물병원, 깨비동물병원, 닥터호오동물병원, 워너비동물병원, 망원동물종합병원, 우리동생동물병원

* 우리동네 펫위탁소 : 2개소(2026)

- 포섬플레이스(반려견 전용), 망원견 애견유치원&애견호텔(반려견, 반려묘)

○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개요

□ **소요예산(2026 본예산) : 39,000천원**(시비 19,000천원, 구비 20,000천원)

○ 산출내역 400,000원×95마리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비 고
총 사업비	40,000	40,000	39,000	

□ **추진실적**

○ 2024년 추진실적: 77마리 / 23,259천원

○ 2025년 추진실적: 104마리 / 29,584천원(개 87마리, 고양이 17마리)

□ **시행 주체**

○ 서울시, 자치구(1:1 매칭사업)

○ 자치구별 관내 동물병원의 사업 참여 모집, 마포구는 3월부터 시행

○ 우리동네 펫위탁소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2월~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 **사업대상: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

- 경제적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사회적 취약계층: 1인가구, 범죄피해자, 기타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1인가구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제3조제1호에 의한 자
- 범죄피해자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에 의한 자로 동법 제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 입소자
- 기타 취약계층 : 구청장이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복지지원을 위해 특별히 사유가 인정되는 자

□ **지원목표: 100마리(반려견, 반려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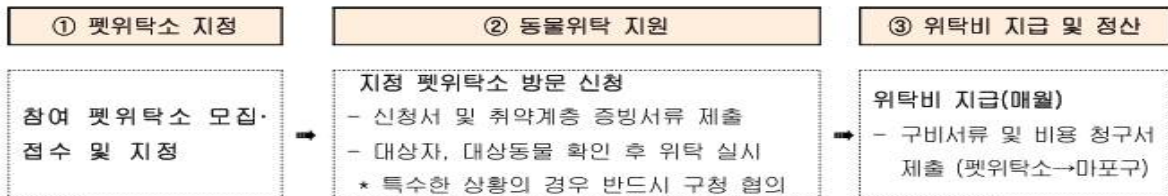
□ **지원목적**

- 고향방문, 입원 등 장기 외출 시 반려동물을 돌보기 힘든 취약계층 어려움 해소
- 전문 위탁업체의 안전한 돌봄으로 동물방치, 유기 감소 등 반려동물 복지 증진

□ **지원내용: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위탁보호**

□ **소요예산: 6,000천원(시비 50%, 구비 50%)**

□ **추진절차**



* 지원금액(위탁비용)

구분	반려견			반려묘
무게	4kg 미만	4kg이상~20kg미만	20kg 이상	무게 무관
비용	3만원/일	4만원/일	5만원/일	5만원/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제29조(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 지원) ① 구청장은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적절한 보호와 치료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진료비
2. 반려동물 위탁보호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음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 26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 총예산: 39,000천원
- 26년 취약계층 반려동물 우리동네 펫위탁소 사업 총예산: 6,000천원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관광경제국 경제진흥과 홍경아
연 락 처	02-3153-8542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민에게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의 방법 등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0.>

⑥ ~ ⑦ (생략)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